

2019년도 「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」 창업기업 모집공고

1인 창조기업의 사업화 역량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「2019년도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」 창업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3월 29일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1 모집 개요

□ 사업목적

- 1인 창조기업의 유망 제품·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마케팅 소요 비용을 지원하여 판로확대 및 사업화 역량 강화에 기여

□ 모집대상 및 분야

- (모집대상) (예비*) 1인 창조기업(동 마케팅 지원사업 기 수혜기업 지원불가)
* 「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이어야 하며, 예비창업자의 경우에는 협약체결 전까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
- (모집분야) ①일반형, ②센터형으로 구분하여 신청(중복신청 불가)

<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모집구분 >

분야	선정 업체 수	자격요건	지원금액
일반형	150개사 내외	(예비) 1인 창조기업	최대 2천만원 (차등지급)
센터형		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, 소공인특화지원센터, 신사업창업사관학교의 센터장·학교장 추천기업 * 추천서 별첨	

* 반드시 1개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하며(중복 신청 불가), 센터장이나 학교장의 추천을 받지 않은 자는 일반형 트랙으로 신청 가능

** 소공인특화지원센터,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추천을 받은 기업은 1인 창조기업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

2

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

□ 신청자격

- ① 또는 ②에 해당되고, '제외 대상'에 해당되지 않는 자

- ① 1인 창조기업을 준비하거나, 혼자 사업을 영위하는 1인 창조기업
- ② 1인 창조기업 유예기간에 해당되는 기업

①에 해당되는 경우

- ☞ (예비 창업자) 사업공고일 기준, 창업을 하지 않은 예비 1인 창조기업으로 향후 사업자 등록 시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1인으로 창업을 할 예정인 자(기업)
- ☞ (1인 창조기업) 사업공고일 기준, 상시근로자 없이 혼자 사업을 영위하는 자(기업)

②에 해당되는 경우

- ☞ (유예기간) 사업자 개시일 기준,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이후 상시근로자를 채용한 자(기업) * 사유 발생 다음년도부터 3년까지 1인 창조기업 유예기간 인정

□ 신청제외 대상(세부 제외사항은 첨부 4)

신청 제외 대상

- ☞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(기업)
- ☞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
- ☞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*을 통해 기 지원받은 자(기업)
※ 협약체결 중단(중단처분·중도포기자) 포함
- ☞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
- ☞ 1인 창조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(지원 제외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(기업) 및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(기업)
- ☞ 기타 중기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기업)

3

지원 내용

선정규모 : 150개사 내외(일반형 + 센터형 포함)

지원내용

- 선정 통보일로부터 1인 창조기업의 제품·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마케팅 비용 지원(기존 진행 중인 마케팅 과제 제외)

<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지원 내용 >

구분	내용
지원가능	제품·서비스 홍보를 위한 마케팅 소요 비용
지원불가	국내·외시장조사, 마케팅 교육, 자격증 취득, 전문가 자문, 전시회 참가, 인증획득

* 마케팅 진행은 수행업체를 통해 위탁 집행해야 함(창업기업이 직접 마케팅 과제 수행 불가)

** 지원가능 마케팅 세부 과제 목록은 [서식5]을 참조할 것

지원금액 : 1인 창조기업의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*을 최대 80%까지 정부지원금 지원(기업 당 최대 20백만원)

*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하며 부가세는 미 지원항목(창업기업 자부담)

< 총 사업비 구성 >

총사업비	정부지원금	자부담금
100%	총사업비 80% 미만	총사업비 20% 이상

< 협약금액 및 정부지원금 구성 예시 >

과 제	총 협약금액* (100%)	정부지원금 구성	
		정부지원금 (80% 미만)	자부담금 (20% 이상)
마케팅	700만원	560만원	140만

* 총 협약금액은 부가세(10%)를 포함하지 않는 금액으로 함

지원기간 : 협약 후 5개월 이내

<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진행절차 >

선정 및 협약	과업 수행기간(5개월)	과제완료
·신청 : '19.4.8.(월)~4.19.(금) ·선정평가 : 서면 + 대면 * 견적 : 수행업체 → 창업기업 ·창업기업 : 자부담금 입금 ·협약 : 창업기업 ↔ 주관 전담기관	·계약 : 수행기관 ↔ 창업기업 ·전담기관 : 보조금 지급, 관리 ·주관기관 : 보조금 관리 ·수행업체 : 창업자 과제 과업수행	·창업기업 : 과제 결과물 및 최종보고서 제출 ·주관·관리기관 : 과제 적격 여부 최종평가

□ **수행업체** : 창업기업이 수행기관을 자율적 선정하여 과제 수행

4 평가 및 선정

□ **선정평가** : 요건검토 및 평가(서류, 발표)를 통해 선정

① **요건검토** : 자가진단표,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등 검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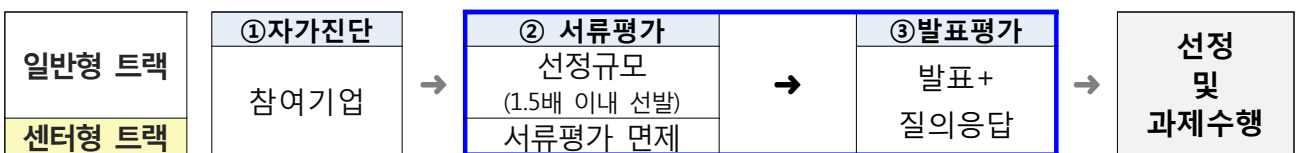
② **서류평가** :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, 일반형 트랙은 선정규모의 1.5배수 이상 선발

* 가점은 서류평가 시에만 반영하며,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으로 불인정

③ **발표평가** : 작성된 사업계획서를 활용하여 10분 이내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

* 발표평가 대상기업은 별도안내 예정이며 발표 및 질의응답은 신청기업 대표가 하는 것을 원칙

<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선정절차 >



□ **최종선정**

○ 참여기업 지원금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선정자 및 최종선정자별 지원 금액을 최종 확정

□ **추진일정(안)**

※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

5

신청 · 접수

□ **신청방법**

- (공고기간) 2019. 3. 29. (금) ~ 4. 19 (금)
- (신청기간) 2019. 4. 8. (월) ~ 4. 19 (금), 18:00까지

< 신청 유의 사항 >

- ①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신청 마감일 이전에 'K-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'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
* 18시까지 최종 단계인 '제출완료' 상태가 되어야 하고, 17시 이후 접수 불가
- ② 'SCI평가정보'에 개인 또는 기업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'개인 실명등록' 또는 '기업 실명등록'이 진행되지 않아 사업신청이 불가하오니 사전확인 필요
- (온라인 등록) http://www.siren24.com/mysiren/customer/sir_g0201_01.jsp
- (전화문의) 1577-1006 (2번 누르고 다시 2번 누르면 상담원 연결)
- ③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,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삭제·반환 불가

□ **신청방법**

- 'K-startup(www.k-startup.go.kr)'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

< 온라인 신청절차 >

- ① K-startup 접속 → ② 회원가입(개인회원) 및 로그인 → ③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 시스템 클릭 → ④ 2019년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클릭, 사업신청(일반형, 센터형 택 1) → ⑤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 체크 → ⑥ 기본정보 입력(1개 희망 주관기관 선택) → ⑦ 팀원 정보 입력 → ⑧ 사업계획서 업로드(용량제한 20MB 유의) → ⑨ 제출 ('마이페이지'에서 신청 확인)

* K-startup(舊 창업넷) 사이트 기존 가입자는 '② 회원가입' 생략

** 온라인 신청관련 세부사항은 '[별첨]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' 참고

*** 주관기관 선택 사항은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사업관리를 위해 창업기업이 자유롭게 선택

□ **제출서류** : 사업계획서, 자가진단표 등 첨부 서류 각 1부

<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제출서류 >

구 분	제출서류	유의 / 참고사항	비고
필수	① 참여신청서	- K-스타트업에서 온라인으로 자동작성	
	② 사업계획서		서식 1
	③ 1인 창조기업 자가진단표	- 온라인 업로드(캡처 또는 PDF 스캔본) * K-스타트업 홈페이지(www.k-startup.go.kr) →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→ One Click 1인 창조기업 자격여부 확인	
	④ 1인 창조기업 증빙서류	- 사업자 등록증 -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* 예비창업자일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대체 제출	서식 2
	⑤ 견적서	- 마케팅 신청금액에 대한 견적서(PDF 파일 스캔)	
센터형	⑥ 추천서	- 온라인 업로드(PDF 파일 스캔) * 입주한 센터의 1인 창조기업 추천서 (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, 신사업창업사관학교, 소공인특화지원센터)	서식 3
선택	일반형 · 센터형 가점 증빙서류	- 온라인 업로드(PDF 스캔본) * 해당자에 한함	서식 4

□ 신청 시 유의사항

-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(기업)은 신청 불가(중단, 중도 포기기업 포함)
- 창업기업은 신청 후 신청과제 및 접수현황을 확인하여 증빙서류 업로드 상태 등 최종 접수여부를 확인

* K-스타트업 → 창업사업통합관리시스템 → 사업신청 → 신청내역조회

- 발표평가 대상자 통보, 평가일정 등 세부사항은 창업진흥원에서 별도 안내 함
-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, 창업진흥원은 보완을 요청 할 수 있으며,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청 포기로 간주 함

□ 평가 중 유의사항

- 발표평가는 예비창업자(팀) 본인(대표), 창업기업 대표가 직접 참여 하여야 하며 가점은 서류 평가에 한해 반영 됨
- 서류·발표 평가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함

□ 선정 후 유의사항

- 선정자는 지침 및 기준*을 준수하여야 하며,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

* 지침 및 기준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

-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

-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창업기업 자부담금을 전담기관이 지정한 지정계좌(가상계좌)에 입금해야 함
 - * 총 사업비 구성(100% 부가세 제외) : 정부지원금(80% 미만) + 창업자 자부담금(20% 이상)
- 예비창업자는 사업계획서의 창업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전에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창업(사업자 등록)을 이행
-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,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,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, 선정 취소,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창업진흥원은 선정자의 사업비 횡령,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,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하여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
-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지급 되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·운영 함
- 총 사업비는 정부지원금 및 자부담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, 부가가치세 및 각종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함
- 선정 통보일 이전에 진행된 과제는 지원하지 않으며, 중복신청할 경우 탈락 처리할 수 있음

□ 기타 유의사항

-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 지침 및 동 사업 세부 관리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지침·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

6

기타 참고사항

□ 사업 신청 문의

문의처		전화
사업 주관(협력)기관	경기도 일자리 재단	031-270-9766
	의왕시(계원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)	031-345-2365
	나눔미넷	0505-396-9000
	대전광역시(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)	042-864-5111
	(주)비스퀘어	070-8031-8036
	(주)오피스이앤씨	070-7853-3985
	(주)미래서비스	070-4267-5093
	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	061-280-7494
k-스타트업(시스템) 이용문의 (www.k-startup.go.kr)		국번 없이 135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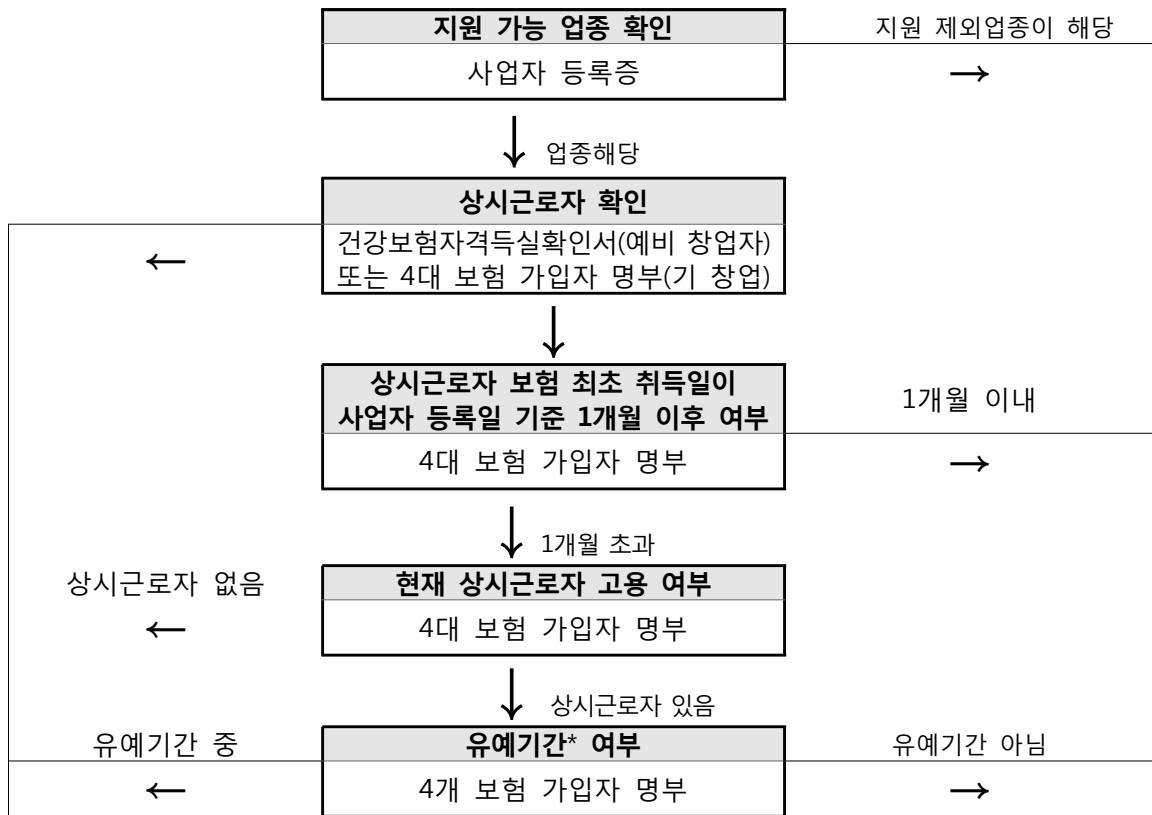
□ 신청·접수 및 종합안내시스템 : K-스타트업(www.k-startup.go.kr)

【참고 1】

1인 창조기업 확인절차

- ◆ **업종 확인** : 사업자등록증 상에 업종, 업태가 1인 창조기업 대상 업종에 속하는지 확인
 * 예비 1인 창조기업인 경우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으로 신청
- ◆ **상시근로자 확인** : 예비창업자인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(직장가입자(타직장), 지역가입자(세대주, 세대원), 직장피부양자, 임의계속가입자) 기 창업자는 4대 보험가입자 명부로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
- ◆ **유예기간** : 4대 가입자 명부 확인 및 상시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인 자는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
 * 유예기간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1인 창조기업 유예기간으로 인정

<준비서류> 사업자 등록증 사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4대 보험 가입자 명부



※ 유예기간 판단 참고

1. **유예기간** : 상시근로자의 보험 최초 취득시점부터 3년 후 연말까지 유예기간에 해당
 (예시) '17.5.1일 창업, '17.7.1일 상시근로자 보험 최초 취득 → 유예기간은 '17.7.1~'20.12.31까지임
2. **유예기간 종료 후** : 상시근로자가 없었던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이며, 이후에 상시근로자를 고용했다면, 상시근로자의 보험 취득시점부터 3년 후 연말까지 유예기간에 해당
 (예시) '17.5.1일 창업, '17.7.1일 상시근로자 보험 최초 취득
 → 유예기간은 '17.7.1~'20.12.31까지 1인 창조기업 유예기간 적용. 다만, '18.3.1~'18.3.31까지 상시근로자가 없고, '18.4.1일부로 다시 채용을 했다면, 재유예기간은 '18.4.1~'21.12.31까지임

지원대상

지원대상 아님

【참고 2】

가점 및 증빙서류

구분	우대 사항	가점	증빙서류	발급처(문의처)
1	기술혁신형 중소기업 (Inno-Biz)	1점	인증서	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(031-628-9600)
2	경영혁신형 중소기업 (MAIN Biz)	1점	인증서	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(1666-5001)
3	벤처기업	1점	인증서	중소기업진흥공단 (1800-7900) 한국벤처캐피탈협회 (02-2156-2100) 기술보증기금 (1544-1120)
4	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* 연구전담부서 제외	1점	확인서	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(1379)
5	여성기업	1점	확인서	한국여성경제인협회 (042-526-2861)
6	장애인기업	1점	확인서	지방중소벤처기업청 민원실
7	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	1점	공제가입증명서	중소기업진흥공단 (1800-7900)
8	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	1점	공제가입증명서	한국고용정보원 (1577-7114)
9	(예비)사회적 기업	1점	인증서	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(1661-4006)
10	일자리 안정자금	2점	승인 통지서	근로복지공단 (1588-0075) 고용센터 (1350)

* 가점은 최대 5점까지 인정

【참고 3】

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창업기업 제재 조항

구 분	제재 및 환수 사유	제재 및 환수기준		비고
		참여 제한	사업비 환수	
중단	□ 보고서 등 제출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*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에 선정된 경우 포함	3년	전액 환수	협약취소
	□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보고서 등 제출자료와 동일·유사한 제출 자료 (사업계획서 포함)를 작성 및 제출한 경우			
	□ 고의로 사업지원금을 횡령,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(협약 종료 이후도 해당) □ 사업결과물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	5년		
	□ 협약기간 내 사업과 관련된 문제로, 형사 또는 민사로 소추된 경우* * 협약기간 내 무혐의 또는 소취하가 확정된 경우 잔여사업비 사용가능	-	-	일시중단
	□ 협약 이후 신청 및 선정 자격에 부적격함이 확인된 경우	-	-	-
	○ 고의성이 있는 경우	1년	-	협약 취소
	○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	-	-	
	□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서 등 서류제출을 2개월 이상 지체하는 경우	3년	전액환수	협약취소
	□ 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의 시정 이행명령에 불응한 경우			
	□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	1년	잔액환수	협약취소
□ 현물을 허위로 대응한 경우	3년	전액환수		
□ 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으로부터 3회의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				
□ 기타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사업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			-	
포기	□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			
	○ 사업지원금 전액을 반납하는 경우	1년	-	협약취소
	○ 사업지원금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	2년	전액환수	협약취소
	□ 정당한 사유로 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	-	-	
	○ 대표자의 사망,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○ 기타 창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	-	잔액 환수	협약취소
실패	□ 사업계획 미 이행 및 휴·폐업한 경우	1년	전액 환수	-
	○ 협약기간 내에 사업계획(창업포함)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	-	-	-
	○ 정당한 사유 없이 휴·폐업한 경우	-	-	-
성실 실패	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정당한 사유로 휴·폐업한 경우	-	잔액 환수	-
경고	□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담 및 주관기관의 점검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	-	-	-
	□ 보고서 등 서류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2주 이상 지체하는 경우	-	-	-
	□ 주관기관의 서류제출 및 프로그램 참석요청에 불응하는 경우	-	-	-
	□ 타 정부지원사업과 사업비를 혼용 또는 대응자금으로 활용하는 경우	-	-	-
	□ 협약기간 내 사업비의 복원 요청에 2주 이상 불응한 경우	-	-	-
주의	□ 주관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각종 보고서에 대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	-	-	-
	□ 창업기업 대표자가 2주 이상 연락 두절인 경우	-	-	-
기타	□ 단순 착오, 지침 미숙지 등으로 사업지원금을 핵심수행과제 해결 외로 집행한 경우			
	○ 협약기간 이내인 경우	-	해당금액 반납 및 적정용도로 집행가능	주의
	○ 협약기간 종료일 이후에 확인된 경우	-	해당금액 환수	-

【참고 4】

신청 제외 대상

☞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

* 단, 신청·접수 마감일('18.7.23)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(기업),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,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(기업),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(기업)는 신청(지원) 가능

☞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

* 단,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(체납처분유예신청), 신청·접수 마감일('18.7.23)까지 국세,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(기업)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(기업),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(기업)는 신청(지원) 가능

☞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*을 통해 지원받은 자** (기업),

※ 중단(중단처분·중도포기자) 포함

**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자는 해당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

☞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

☞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(지원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

* 예비창업자로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으로 분류하며, 동 사업에 신청 가능

☞ 1인 창조기업 지원 자격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 자

☞ 기타 중기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기업)